

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9 화순군수
나. 회부일자 : '97. 5. 28
다. 상정일자 : '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수철
나. 개정사유
-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- "이장 및 예비군 이대장의 추천에 의하여"를 "이장의 추천에 의하여"로 개정(안 제4조 제3항)
 - "위원회"를 "위원회 회의"로 "사업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"를 "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"로 개정(안 제5조 제1항)
 - "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"를 삭제(안 제6조 제4항)
 - "사업수입, 기부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"를 "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"로 개정(안 제9조 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조항의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략 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부 :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-b8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 안 이유

-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"이장 및 예비군 이대장의 추천에 의하여"를 "이장의 추천에 의하여"로 개정(안 제4조 제3항)
- "위원회"를 "위원회 회의"로 "사업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"를 "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"로 개정(안 제5조 제1항)
- "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"를 삭제(안 제6조 제4항)
- "사업수입, 기부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"를 "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"로 개정(안 제9조 제1항)

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제3항중 "이장 및 예비군 이대장의 추천에 의하여"를 "이장의 추천에 의하여"로 한다.

제5조 제1항중 "위원회"를 "위원회 회의"로 하고 동조 제2항중 "사업위원 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"를 "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"로 한다.

제6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9조 제1항중 "사업수입, 기부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"를 "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제2조 (기능) 1~5 (생략) <u>6. 이 방위 및 이 예비군 운영 협조</u> <u>에 관한 사항</u>	제2조 (기능) 1~5 (현행과 같음) <u>(삭제)</u>
제4조 (위원등의 임기) ①~② (생략) ③ 위원이 전출,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이장 및 예비군 이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.</u>	제4조 (위원등의 임기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 - - - - <u>이장의 추천에 의하여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.
제5조 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(이하 "회의"라 한다)의 의장이 된다.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사업 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	제5조 (위원장) ① - - - - - <u>위원회 회의</u> - - - - -. ② - - - - - <u>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</u>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6조 (회의 및 의사) ①~③ (생략)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	제6조 (회의 및 의사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u>(삭제)</u>
제9조 (회계)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, 기부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 ② (생략)	제9조 (회계) ① - - - - - <u>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